

서울고등법원
제 14 민사부
준 비 명령

사 건 2005나 84701 교수지위확인
[원고 김명호 /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]

피고(피항소인)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(귀하)

이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 258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.
동봉한 상대방의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제출기한까지 준비서면과
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기한 : 2005. 11. 18.

2005. 10. 28.

재판장 판사 이상훈



◇ 유의사항 ◇

-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,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주요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의 의견(성립인정, 부인, 부지 등)을 밝혀야 합니다.
-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다음 요령에 따라 함께 제출·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증신청 : 서증사본 및 이에 대한 증거설명서 제출
 - 증인신청 : 증인의 이름 · 주소 · 연락처 · 직업, 증인과 원 · 피고와의 관계,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『증인 신청서』 제출
 - 검증 · 감정 · 사실조회 · 문서송부증명서 등 :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 제출
- ※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 오시면 내려받기 (download) 할 수 있습니다.
(www.scourt.go.kr => 소송절차 => 소송절차 => 증거신청)
-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며,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(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).